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</p> <p>③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사회산업국장,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중진에 열의가 있는 자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(단체) 및 시설의 대표자 <p>(신 설)</p>	<p>제3조(구성)①~③(생략)</p> <p>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. 질병,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<p>제4조(위원의 임기)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----- ---.(삭 제)</p>